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89008(본소), 2020가합521367(반소) 판결
[상속회복청구 등 · 구상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예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선희, 강한결

피고(반소원고)B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성희진

피고C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성희진

변론 종결2022. 10. 20.

판결 선고2023. 2.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와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69,723,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2.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00,4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각 76,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E과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2019. 4.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0. 23. 망인의 어머니인 F로부터 서울 강남구 G, H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8. 12. 26. J에게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K, L호(이하 '종로 오피스텔'이라고만 한다)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기간 2019. 1. 4.부터 2020.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2. 주식회사 M(이하 'M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상환기일을 2019. 9. 22.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그중 1억 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날 M은행 앞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서울 종로구 N, O호(이하 '종로 아파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마. 망인은 2019. 4. 19. 증인 P, Q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R 앞에서 '피고들에게 망인의 모든 재산을 1/2씩 포괄유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2019년 증서 제149호)에 의한 유언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포괄유증'이라고 한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증의 목적물: 부동산 및 예금채권 등 전 재산

가. <부동산의 표시>

① 종로 아파트

-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부 대출금 채무가 있음

② 종로 오피스텔

- 위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있음

나. <예금채권의 표시>

- S조합 등을 포함한 예금주 망인의 전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예금채권

다. <기타 동산 등 나머지 재산권의 표시>

- 기타 유품 등 동산 전체 등

2. 유증의 내용

가. 망인은, 망인 소유인 위 1. 기재 부동산과 예금채권, 동산 등 및 이 유언 효력발생 전 위 예금의 일부나 전부를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예치하거나 신규 개설, 증감 변동한 예금채권과 위 재산권의 매매, 재개발 시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권리와, 화재, 공용수용, 기타 등으로 인하여 본인이 취득하는 대상청구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권에 관하여, 수증자인 피고들에게 각 2분의 1씩의 균등한 비율로 전부 포괄유증한다.

나. 위 유증을 받는 부담으로, 종로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중 1억 원과 종로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수증자인 피고들이 각 2분의 1씩의 균등한 비율로 각 변제하여야 한다.
다. 종로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중 대출원금 2억 원 및 이자는 원고가 변제하여야 한다.
바. 피고들은 종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6. 3. T에게 종로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한 후
같은 날 T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달 14. 주식회사 U 앞으로 종로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 B은 2020. 1. 3. M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3억 원, 이자 33만 654원, 상환비용 38만
8,524원 합계 3억 71만 9,178원 전부를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관련

1) 원고 이 사건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종로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가액 13억 6,5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망인 부담부분인
2억 원 대출금채무를 공제한 11억 6,500만 원과 망인의 사망보험금 2억 2,000만 원 합계 13억
8,500만 원이고, 여기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9을 곱하여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은 1억 5,388만
8,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694만 4,000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는 망인이 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망인 소유의 I아파트를 증여받음으로써
특별수익하였고, 망인은 사망 이전에 V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전부
수령하여 모두 소비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받지 않았다.

나. 피고 B의 반소청구 관련

1) 피고 B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 중 1억 원만 원고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
나머지 2억 원도 상환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인 종로 아파트가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출원리금 3억 71만 9,178원을
상환하였는바, 원고는 구상금으로 피고 B에게 위 상환금 중 원고가 M은행에 상환하여야 할

부담부분인 2/31)에 해당하는 2억 47만 9,452원(= 3억 71만 9,178원 × 2/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전부를 원고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는바, 이로써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 B이 M은행에 대출원리금 3억 71만 9,178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상환금을 구상하여줄 의무는 없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된 후(A), 이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해진 유류분 비율(B)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C). 유류분 부족액은 이처럼 산정한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해야 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여 산정한다(D).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A = 1) 적극적 상속재산액 + 2) 증여액 - 3) 상속채무액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B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수증액 및 수익액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D = 당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적극적 상속재산액 가) 갑 7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W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은 종로 오피스텔 가액 3억 300만 원, 종로 아파트 가액 10억 6,200만 원 합계 13억 6,500만 원(= 3억 300만 원 + 10억 6,200만 원)이고,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채권은 X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1만 8,251원, X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7원, Y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4원, Y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미합중국통화 0.15달러 합계 1만 8,435원(= 1만 8,251원 + 7원 + 4원 + 0.15달러2))이므로, 결국 적극적 상속재산액은 13억 6,501만 8,435원(= 13억 6,500만 원 + 1만 8,435원)이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보험금 2억 2,000만 원도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5, 8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18. 11. 2. V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던 사망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등 1억 9,125만 7,738원을 지급받아 이를 암 투병 중인 자신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액 피고들은, 망인이 F에게 I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망인의 재산인 I아파트를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F에게 I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아파트가 망인 소유 재산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상속채무액 가) 살피건대, 망인은 J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종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원이 상속채무액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포괄유증을 할 당시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변제하여야 하고, 1억 원은 피고들이 변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한 점, 망인이 2019. 4.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원을 상환할 수 있는 날짜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원은 여전히 원고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나머지 1억 원만 망인이 원고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할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상속개시 당시 원고에 대하여 1억 원 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결국 상속채무액은 총 1억 1,000만 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000만 원 + 상환채무 1억

원)으로 산정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12억 5,501만 8,435원(= 적극적 상속재산액 13억 6,501만 8,435원 - 상속채무액 1억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다. 구체적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살피건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12억 5,501만 8,435원에 원고의 유류분 비율인 1/9(= 법정상속분 2/9 × 유류분 1/2)을 곱하면, 원고의 유류분액은 1억 3,944만 6,492원(= 12억 5,501만 8,435원 × 1/9)으로 산정된다.

라.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의 재산인 1아파트를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특별수익액은 없다.

마.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D)

원고는 이 사건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순상속분액 역시 없다.

바. 유류분 부족액

결국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억 3,944만 6,492원으로 산정된다.

사.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방법 및 범위

1)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포괄유증으로 종로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에 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3) 망인이 사망한 2019. 4. 30.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가액은 종로 오피스텔 가액 3억 300만 원, 종로 아파트 가액 10억 6,200만 원 합계 13억 6,500만 원(= 3억 300만 원 + 10억 6,200만 원)인데, 그 가액은 변론종결일인 2022. 10. 20. 동일하다고 추인되고, 사망 당시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 채권 18,435원은 여전히 각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가액 역시 동일하다고 추인된다.

4)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와 변론종결일 기준 망인이 보유하던 전 재산의 가액이 동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반환으로 각 6,972만 3,246원(= 유류분 부족액 1억 3,944만 6,492원 ÷ 2명)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2.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3. 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2억 원은 여전히 원고가 M은행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망인이 원고 대신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종로 아파트가 경매되는 것을 막고자 2020. 1. 3. 대출원리금 3억 71만 9,178원 전부를 상환하였는바,

종로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이 사건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위 상환금의 2/33) 범위 내에서 민법 제364조에 근거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구상금 2억 47만 9,452원(= 3억 71만 9,178원 × 2/3)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피고들이 종로세무서로부터 상속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추정상속재산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피상속인 재산이 처분되거나 예금이 인출된 경우에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세법상의 개념이고, 이를 곧바로 민법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정봉기

판사김성준

판사이진희

- 1)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원금 2억 원/이 사건 대출금 전체 원금 3억 원.
-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3. 1. 1. 3. 원화의 대미달러, 원화의 대위안/대엔 환율' 통계표의 '원/달러(시가)' 통계항목에 따른 2019. 4. 30. 기준 미합중국 통화 1달러는 1,159원이므로, 미합중국통화 0.15달러를 173원(= 1,159원 × 0.15/1,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한다.
- 3)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원금 2억 원/이 사건 대출금 전체 원금 3억 원.